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205호 2020. 8. 11.



회 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471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규 칙

○ 제1263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

○ 제1264호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9

고 시

○ 소하천정비사업 준공 고시 ····· 21

공 고

○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 23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4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8월　11일

청양군 조례 제2471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선”을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오수를”을 “더러운 물을”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함”을 “함”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선공사”를 “보수공사”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선”을 “보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의 시공자재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선”을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수선비용도”를 “보수비용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사비 미리 납부한 금액을”을 “공사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선”을 “보수”로, “손괴”를 “파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를 “않”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개시하거”를 “시작하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할”을 “하지 않을”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적치하거”를 “쌓아놓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를 “수도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달리하는”을 “다르게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출하여 합산”을 “정하여 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정정하고”를 “고치고”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무에”를 “유무에도”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수수료의”로 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8조제3항제2호 중 “탁도”를 “혼탁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2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7조 전단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8월 11일

청양군 규칙 제1263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무에”를 “유·무에도”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사용량의 5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8월　11일

청양군 규칙 제1264호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장·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장·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장·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일상경비 지출 한도액) ①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

는 것”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2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별지 제25-1호 서식)”를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로 한다.

⑥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청양군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에 의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로 한다.

제10조 중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제1관서(본청 실·과 제외)	기타관서· 임시관서	읍 면
회 계 책 임 관	기획감사실장	-		
징 수 관	부 군 수	관서의 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 · 면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세입담당과장		
재 무 관	부 군 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읍 · 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장 ·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 군 수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 · 면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부 군 수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감사실장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지 출 원	회계팀장	회계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		부읍 · 부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 업무관련 각 팀장	세입업무팀장	회계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재무업무팀장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각 실 · 과 서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업무담당	회계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회계업무담당자	회계업무담당자		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청양군 의회 청양군 보건의료원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 ·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 · 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8. 그 밖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전부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부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부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외에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청양군 고시 제2020 - 68호

소하천정비사업 준공 고시

마재소하천 정비사업 준공내용을『소하천정비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6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1. 소하천정비공사 명칭 : 마재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집중호우로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단면 및 여유고 부족으로 침수 및 유실이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치수 및 이수기능을 만족하면서 친수기능 등 자연 친화적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요 : 소하천정비 L=0.3Km
3.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도림리) 일원
4.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청양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5. 소하천정비사업 착수 및 준공 년월일
   가. 착수 : 2020. 03. 26.
   나. 준공 : 2020. 06. 23.

6.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
   (사유 : 편입된 토지는 매입하여 군유지화 하였음으로 게재생략)
7. 소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 : 충남 청양군청 안전재난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소하천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항에 의함.

청양군 공고 제2020 - 1068호

[[V] 통행의 금지·제한 / [V]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1. 도로의 종류 : 군도
2. 노선명 : 7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종류의 차량
4. 구간 : 공사구간 L=571m
5. 통제기간 :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6. 제한이유
   - 형산리 군도7호 위험도로 개량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7.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구간 : 공사현장→형산리 마을회관→이화교차로→형산교차로

※ 첨부서류(별도)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청양군 공고 제2020 - 108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청양군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1. 공인 등록(폐기)일: 2020년 8월 10일

2. 공인 등록(폐기) 사유: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3. 공인명 및 인영: 따로 붙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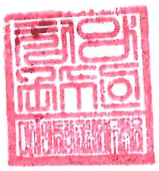
□ 신조 공인

공인명	서체	규격	인영	비고
청양군수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3.0㎝×3.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읍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운곡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대치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정산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목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 신조 공인

공인명	서체	규격	인영	비고
청남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장평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남양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화성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비봉면장인 민원실전용	훈민정음체	2.1㎝×2.1㎝		통합민원 발급기용

□ 폐기 공인

공인명	서체	규격	인영	비고
청양군수인 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청양읍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운곡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대치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정산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목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 폐기 공인

공인명	서체	규격	인영	비고
청양군수인 청남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장평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남양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화성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수인 비봉면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4㎝×2.4㎝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청양읍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 폐기 공인

공인명	서체	규격	인영	비고
청양군운곡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대치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정산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목면장 인통합민원사무 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청남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장평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 폐기 공인

공인명	서체	규격	인영	비고
청양군남양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화성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
청양군비봉면 장인통합민원 사무전용	전서체	2.0㎝×2.0㎝		통합민원 발급기용